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23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1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구합564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

원 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21. 5. 27.

판 결 선 고 2021. 6. 24.

주 문

1. 피고가 2020. 9. 10.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101,472,340원, 지방교육세 12,462,2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8,153,613원, 지방교육세 9,559,8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[1)]

1) 원고가 기재한 금액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분리하여 기재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23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피고는 2020. 9. 10.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[redacted]구 B 외 444건 토지(총 면적 23,776.12㎡)에 관한 2020년 귀속 재산세 101,472,340원, 지방교육세 12,462,290원을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부과처분'이라 한다). 위 부과대상 토지 중 [redacted]구 B 도로 4,959.7㎡(이하 '이 사건 쟁점토지'라 한다)에 대한 부분은 재산세 23,318,727원, 지방교육세 2,902,416원이다(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'이 사건 쟁점 재산세 등'이라 한다).

나.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[redacted]광역시 소유이다. 사업시행인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어 원고에게 귀속될 예정이다.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20년 귀속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2020. 6. 1. 당시까지 준공인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

이 사건 쟁점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통지시이므로, 2020년 귀속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2020. 6. 1.까지 아직 원고에게 귀속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.

나. 피고

원고는 위 재산세 부과 기준일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23

있다.

3. 판단

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은 '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'고 규정하고 있다. 이 사건의 경우, 이 사건 쟁점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.

한편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이므로(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두53075 판결 등 참조), 2020. 6. 1.까지 준공인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도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재산세 101,472,340원, 지방교육세 12,462,290원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 재산세 23,318,727원, 지방교육세 2,902,416원을 공제하여 구한 정당세액은 재산세 78,153,613원(= 101,472,340원 - 23,318,727원), 지방교육세 9,559,874원(= 12,462,290원 - 2,902,416원)이므로,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23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